① 2015년 사고사례

(15-001) ○○「○○지구 배수개선사업」차수벽체 전도사고

공사명	○○지구 배수개선사업			
사고일시	2015년 01월 26일(월) 09:00분경		기상상태	힏
소재지	전남 순천시 대대동	사고 종류	전도	
구조물 손실	프리캐스트 차수벽체	인적피해	사망 1명	
장비 손실	_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	해당(),	해당없음(🔘)

Ⅱ 공사개요

o 공사종류: 수문

o 규모: 배수장: 1개소, 배수문 7개소(신설 5개소, 교체 2개소)

배수로: 18조 10.3km, 매립 : 3.9ha, 습지 4.1ha

수혜면적: 311ha(유역면적: 908ha)

2 사고경위

사고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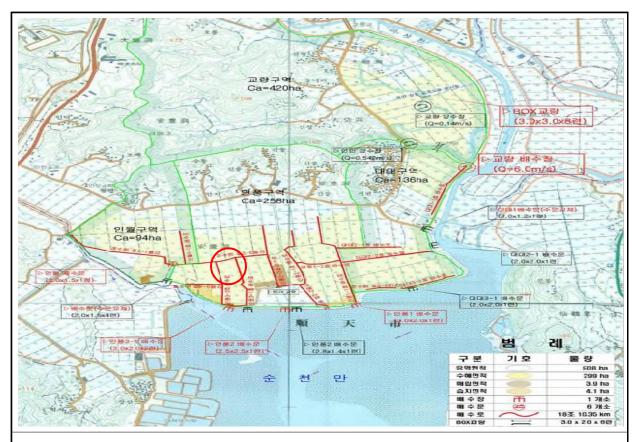
o 당초 현장타설로 설계된 배수문 차수벽 콘크리트를 연약지반의 토사전도 방지 및 공기절감을 위하여 계획변경 승인 없이 현장타설 대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로 변경시공 하던 중 전도방지 지지대 등을 사전에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을 제거 하여 PC벽체가 전도되어 거푸집제거 근로자 1명이 협착 사망.

③ 사고원인

o 당초 현장타설로 설계된 배수문 차수벽 콘크리트를 전도방지조치 및 계획변경 승인 없이 현장타설 대신 전답인 연약지반 위에서 차수벽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로 제작하던 중 전도방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 확보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제거.

재발방지 대책

- o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및 유해· 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 o 거푸집을 해체할 때에는 거푸집 보호는 물론 거푸집의 낙하충격으로 인한 근로자의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o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동결지반 위에는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으며,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거나, 두께 45mm 이상의 받침목, 전용받침철물, 받침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고현장 위치도



사고 사진

사고현장 전경



사고 사진

차수벽 PC 파손 현황



사고 사진

PC제작장 지반 현황